

수신 : 철원소방서 예방총괄팀장

제목 : 121공병대대 부대개편사업 병영식당 주방소화기기 설치에 따른 질의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『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6조

나.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-1748(2025.02.12.) 인·허가 의제협의(소방협의)  
○○○공병대대 병영식당의 9개동 증축공사

3. 위 관련에 의거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0-5 외 1필지 『5공병여단 121공병대대 교정 및 군사시설』 건축허가(증축)에 따라 설계도면을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

가. 병영식당내 소화시설

1) 설계도면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『주방용확산소화기』 설치로 설계됨

2) 도면검토 구두질의 등을 통하여 집단급식소에는 『식품위생법 제2조 제2항』 및 『국방군사시설 소방설비설계기준(2-10-60) 1부 4장 기타소방설비 설계기준』에 의거 상업용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검토 권고 받음.

나. 질의사항

1) 본 병영식당에 설계되어 있는 『주방용확산소화기』 설치 와 더불어 『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』 및 소규모공간용 『가스자동소화장치』를 설치함으로써 『상업용주방 자동소화장치』를 대응할수 있는지 여부

4. 이에 “상기 3항의 나”와 같이 설계내용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소화장치를 현장적용(안)에 대하여 귀 기관에 의견을 검토요청 합니다. 끝.

25-A-00부대 건설사업관리용역(A361)

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박 채 원



담당 이 정 수

상무 최형규

전무 이관섭

단장 박채원

시행 디엠A361-197

(2026.08.10)

접수

우 2400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을 금학로 267 디엠에이앤씨 A361현장 /

전화번호 010-7278-0741

팩스번호

001hanjs@naver.com

비공개